

**여성가족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관련 법률**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주은

Tel. 788-4723/Fax. 788-4729

E-mail: cje@nars.go.kr



요 약

질의 요지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요지

각종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관계분야의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3년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단기 계획 및 계획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입법조사를 요청함.

1.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의무가 부가된 정부행정 현황 및 각 건별 근거법률조항
2. 정부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또는 필요성 논의와 관련한 기존연구 및 주요내용
3. 해외 주요국의 국가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4.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회답일 2016. 11. 18.)

■ 조사·분석 방향

- 여가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주 요 내 용

- 여성가족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관련 법률 현황
 - 총 23개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에서 6개의 법률은 중장기계획(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과 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기타 검토사항
 - 요청한 “정부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또는 필요성 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아니함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은 본문에 제시함
 -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중장기계획(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추진실적 점검은 주로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 수준’ 역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수립주기가 5년인 중장기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공무원 집단 뿐 아니라 정책당사자집단, 민간영역 등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사업도 포함, 즉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목 차

1. 여성가족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관련 법률	1
1) 관련 법률과 조항	1
2) 기타 검토사항	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관련 법률

- 총 23개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에서 6개의 법률은 중장기계획(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고할 것

1) 관련 법률과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6.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중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5.6.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4조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0.1.18,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타 검토사항

- 요청한 “정부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또는 필요성 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아니함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 관련하여 <표 1>을 참고할 것
-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 문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임
 - 중장기계획(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표 1> 참조)
 - 추진실적 점검은 주로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 수준’ 역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수립주기가 5년인 중장기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공무원 집단 뿐 아니라 정책당사자집단, 민간영역 등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사업도 포함, 즉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표 1〉 중장기계획 수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현황

근거 법률	수립 계획	수립 의무자	수립 주기	수립 여부	연구용역사항	해당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동향	해당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기본계획('15~'17년)수립('15.6월) -기존의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13~'17년)을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추진('15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체과제) ○ 제2차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추진예정('17년)(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베를린 제2차양성평등기본계획(2011~2016년) ○ (노르웨이)2014년양성평등기본계획 ○ (스웨덴)스톡홀름지방정부양성평등기본계획(2014~2018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기본계획('10~'12년)수립('10.5월) ○ 제2차기본계획('13~'17년)수립('12.12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11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해당없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10~'14년)수립('10.3월) ○ 제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15~'19년)수립('14.12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 해당없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	5년	수립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추진('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해당없음	기본계획에따라매년 중앙부처및지자체로부터전년도추진실과 및차년도시행계획을 제출받아조사및분석 하고성과평가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	5년	수립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기본계획에따라매년 중앙부처및지자체로부터전년도추진실과 및차년도시행계획을 제출받아조사및분석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하고성과평가
「청소년기본법」(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5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12.12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란드)청소년정책기본계획(Opetus-jakulttuuriministeriö) ○(벨기에)프랑드르청소년정책계획(VlaamsJeugdbeleidsplan) ○(독일)청소년정책기본계획(FederalChildandYouthPlan) ○(일본,홋카이도)2008-2017년 홋카이도청소년육성기본계획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따른추진실적분석·평가실시(청소년기본법제14조)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